##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99 발의연월일: 2021. 6. 9.

발 의 자:송기헌・김병욱・김승원

김영호 • 박성준 • 백혜련

소병철 • 안규백 • 윤건영

이상헌 • 이성만 • 최기상

(12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검사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·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,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.

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"을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 장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징계등 사유의 시효) ①	제25조(징계등 사유의 시효) ① -
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	
날부터 3년(「국가공무원법」	(_「국가공무원법」
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	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)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,
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
한다.	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
	<u>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</u> 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